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구축을 위한 제안

A Sugges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이준서*

Lee, Jun-Seo

목 차

- I. 시작하며
- II. 환경문제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여건
- III.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황과 평가
- IV. 동북아 환경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안
- V. 마치며

국문초록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적 환경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환경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의 노력이 구체화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고, 그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여건의 다양화, 환경협력 추진 여건에 대한 상이한 입장,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부족 등 동북아 지역의 여건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과 대응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i) 환경오염과 그 피해에 대한 사안을 지속적인 제기하고 국제적·지역적으로 공론화, (ii) 역내 관련 국가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간의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민감한 환경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논문접수일 : 2009.12.30

심사완료일 : 2010.1.29

게재확정일 : 2010.2.1

*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별 실천방안을 마련, (iii) 구체적으로 도출된 국가별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지역적 대응방안을 마련, (iv) 이상 일련의 절차들을 총합하여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제어 : 동북아, 월경성 환경오염, 지역 환경협력, 환경협력체, 단계적 접근

1. 시작하며

환경문제가 비단 한 국가의 영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른바 초국가적 또는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인 공동대응이라는 문제는 - 특히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 그 이상이나 가치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 또는 통제 아래에서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¹⁾ 실질적으로 국제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는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확한 책임관계를 제도적으로 설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²⁾ 아울러 국제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월경성 환경오염의 문제는 기존의 법적인 책임논리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아 각국은 이러한 법적 접근방법을 기피하는 경향마저도 보이고 있다.³⁾ 이처럼 기존의 국제법적 규범을 통한 국가책임제도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국가 간의 환경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 1) Trail Smelter 사건이나 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이와 같이 환경훼손을 야기하지 않을 국가의 책임(obligation not to cause environmental harm)이 언급된 바 있으며, UN인간환경선언 원칙 제21에도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이나 국가의 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 2) 실제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다룬 Nuclear Test 사건과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을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제중재재판도 Trail Smelter 사건, Lanoux호 사건, Gut Dam 사건 등에 대한 중재만이 있을 뿐이다.
- 3) 노명준,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1호(1992), 99면 참조.

“UNCED”) 이후⁴⁾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적 환경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⁵⁾ 그동안 이러한 논의들은 동북아 지역의 특성과 국제적 환경협력의 흐름을 반영하여 꽤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특정지역이나 매체에 한정된 환경오염이나 환경피해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관점이 사막화, 황사, 산성비 등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들은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SPEC),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WPAP) 등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환경협력체제를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처럼 환경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의 노력이 구체화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고, 그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해당 지역 내 각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입장의 차이,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형성의 미흡, 환경협력사업의 범위와 참가국의 상이성, 주요 영향 국가인 중국의 소극적 태도와 한국과 일본의 주도적 추진력의 미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한 채 줄곧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협력은 해당 국가들에게 일정한 책무를 지우면서 각 국가들의 공동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국제적·지역적 환경의 보전을 위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환경협력을 통하여 지역 간 환경협력을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우선 동북아 지역 내 환경협력의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동북아 지역 내 환경협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국제 환경의 추이에 따라서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4) 이 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는 국제협력뿐 아니라 지역협력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 또한 적극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5) 여기에서 말하는 '동북아 지역'은 한국(남한·북한), 일본, 중국,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열도에 의해 태평양과 분리되고, 히말라야 산맥과 파미르 고원에 의해 서아시아와 구분되며, 우랄·알타이 산맥에 의해 유럽과 구분된다.

II. 환경문제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여건

1.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중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인 산성비⁶⁾와 황사⁷⁾로 인하여 인접국가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이미 동북아 산성비 및 황사문제 등 지역 내 환경문제를 정식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실제적인 대기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더 진전된 연구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각국의 오염배출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⁸⁾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을 강조하고는 한다.

실질적으로 역내 과학자들이 환경오염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형성하

- 6) 토양과 산림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산림감소, 농작물 및 동·식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산성비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00-1,000km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황사와 함께 월경성 환경오염(越境性 環境汚染)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밀집지역인 함흥, 제련소와 화학공장이 있는 원산, 제철소와 화학섬유공장 등이 들어선 청진 등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성비와 그에 따른 대기·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동강, 두만강, 압록강 등은 크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환경보호사업에 힘 쏟는 북한”, 연합뉴스 2007. 6. 7. 기사.
- 7) 황사현상은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및 황하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층기류를 타고 3천~5천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정도의 편서풍에 실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이다. 황사는 특히 급속한 공업화로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중국을 경유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매년 2,000만 톤의 황사가 발생하여 4월을 전후하여 한반도에 유입되고 있다. 황사가 발생하면 석영(실리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된 흙먼지가 대기를 황갈색으로 오염시켜 대기의 먼지량이 평균 4배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작은 황진이 사람의 호흡기관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눈에 붙어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안질환을 유발한다.
- 8) 예를 들어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는 일종의 오일러 모델(Eulerian Model)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배출하는 SO_x의 대부분은 배출국 자체 내에 침적되고 단지 소량의 부분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또한 이것들의 대부분도 해양에 침적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원동욱, “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371면.

기 전에는 국가 간 정책적인 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결국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하나의 통일적 모델을 통해 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의견대립을 아직까지도 조율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요컨대, 동북아 국가 간 역내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일치된 과학적 의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바로 동북아 환경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치적·경제적 여건의 다양화

경제수준의 변화는 규모(size), 무역구조(trade composition), 그리고 기술수준(level of technology)이라는 세 가지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그 나라의 오염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⁹⁾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자원을 이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무역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후된 기술과 그에 따른 생산구조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오염이 심화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수요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증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술 및 생산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소득수준 향상이 오히려 환경기술의 발전과 환경개선이라는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

동북아 지역은 비교적 단기간 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경제체제라는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내 각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제발전단계는 어느 정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1997년 기준으로 1인당 실질 GNP는 일본이 33,370달러, 한국이 10,307달러, 중국이 738달러, 러시아가 6,140달러, 몽골이 267달러였다.¹⁰⁾ 이 당시 일본은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었고, 한국도 OECD에 가입한 선발개도국이었지만,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였던 개발도상국이며, 북한과 몽골은 아직 뚜렷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의 소득격차는 환경의식의 차이와 함께 환경협력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9) Grossman G. M. and A. B. Krueger, Environmental Impacts of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3914 (Nov. 1991) 참조.

10) 김성윤·김용우·안형기·이기한·정희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체계 - 동북아 환경개선 방안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3권 제3호, 1999. 5면.

〈표 1〉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의 GDP와 GNI의 비교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GDP(순위)	GDP, PPP(순위)	GNI(순위)	GNI, PPP(순위)
남한	929,121 (15)	1,358,037 (13)	1,046,285 (14)	28,120 (44)
북한	-	-	-	-
일본	4,909,272 (2)	4,354,550 (3)	4,879,171 (2)	35,220 (32)
중국	4,326,187 (3)	7,903,235 (2)	3,899,289 (3)	52,260 (7)
몽골	5,259 (139)	9,388 (140)	4,411 (149)	3,480 (148)
러시아	1,607,816 (9)	2,288,446 (6)	1,364,475 (11)	15,630 (71)

출처 : 세계은행(www.worldbank.org)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부분이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했었다. 이처럼 직접투자를 포함한 국가 간 기술 및 자본의 이전은 중공업 중심의 공해유발 산업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른바 '공해피난처(pollution haven)'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¹¹⁾ 실제로 직접투자 대상국가간 기술격차가 심할 경우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는 저급의 공해산업은 이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의 저공해산업은 자국 내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²⁾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혼재된 지역 내에서는 각 국가마다 환경목표 및 환경기준이 다르며 또한 환경오염이나 환경피해를 규제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지역적 환경협력을 활성화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마다 환경규제나 환경정책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어떤 국가에게는 경쟁상 유리하게 작용하고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공해유발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원초적으로

11) 이는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같이, 환경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의 공해산업이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해산업의 이동현상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선진국들의 정책방향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만약 선진국의 공해산업이 자국의 엄격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국제환경협력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책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정희성·정희철, "동북아 환경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토계획」 제 35권 제1호, 2000, 113면 참조.

12) 김성윤 외(註 10), 8~9 참조. 우리나라도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일본의 공해산업을 온산 공업단지로 이전하도록 한 일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되겠다.

환경오염에 대한 유인을 야기한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른바 “사다리를 걷어차는(kicking away the ladder)”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담도 일정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데, 중국 내에서도 현재의 생산구조에 대한 반성이 일고는 있지만,¹³⁾ 아직까지 중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향후 에너지소비 또한 상당히 증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3. 환경협력 추진 여건에 대한 상이한 입장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순차적인 경제발전 과정은 환경정책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경험에 의한 학습, 가용기술의 증대, 오염단위당 저감비용의 감소, 국제적인 환경압력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¹⁴⁾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환경정책의 수준 또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환경정책이 순차적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수렴되는 이유로는, 환경문제의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 및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각 국가는 보다 발전된 정책수단을 모색할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후발 개발도상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에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이 이행확보 수단으로 무역규제를 채택함에 따라 부족한 내수시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에 주력하였던 후발개도국은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¹⁵⁾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우 경제발전 형태가 유사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발전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후자의 요인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4.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부족

동북아 환경협력은 유럽 등 여타의 지역과 같이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현

13) 중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오는 2013년까지 탄소세를 신설해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가 제안했다. “中, 2013년까지 탄소세 신설해야”, 연합뉴스 2009. 9. 24. 기사.

14) O'Connor, D., *Managing the Environment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Lessons from the East Asian Experience*, OECD, 1994.

15) 김성윤(註 10), 11.

안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촉발되었다기 보다는 1990년대 초 국제적 차원에서 활성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협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당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협력이 모색되지 않은 채 총체적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을 각각 분산시켜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환경협력체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동북아 내 각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기 미흡한 배경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에야 일부 협력체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는데 그쳤고, 체계적인 지역 환경협력체제는 아직까지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능력의 강화와 환경개선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동북아 환경협력이 소기의 목적인 역내 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환경협력을 둘러싼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은 상존하고 있고, 국가 내 부처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정보소통 및 협조체제 또한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Ⅲ.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황과 평가

1. 현황

가. 다자간 환경협력

동북아 환경협력은 1992년 UNCED 이후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지역 내 5-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및 양자협력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환경협력에 임하는 지역 내 국가 간의 상호이해가 다르고 구체적인 조직과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환경협력의 제도화·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환경협력 중에서 기존의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ESCAP")가 있다. APEC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의체이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지역 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협

의체라는 특성 때문에, APEC 내에서의 환경협력 논의는 경제협력 논의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ESCAP은 아·태 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업추진 지침서인 지역활동계획(Regional Action Programme)¹⁶⁾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환경협력을 위한 전담기구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한편, 기존의 국제기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협력체를 만들어 역내국가 간의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이하 "SOM-ECNEA")와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이하 "NOWPAP")이 있다. 이밖에도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환경협력의 장으로 일본 환경청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Environment Congress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ECO-ASIA"),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이하 "NEACEC"),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이 주관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등이 있다.

〈표 2〉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 환경협력현황

명칭	시작 년도	참여국가 (기구)	참여주체 범위	협력의 목표와 내용	주요성과	문제점 및 전망
ESCAP	1947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3개국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아·태 환경 및 개발각료 회의 아·태환경 및 지속가능개발위원회 회의(RAP 채택)	환경협력 전담기구가 아님 재정기구로서의 역할 미비
APEC	1989	한국, 일본, 중국 등 21개국	각국 정상 및 고위관료, 민간자문기구	역내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의 조화	경제 환경통합의 기본 원칙 채택, 연례 환경 각료회담 및 고위 관료급 회담 개최	환경과 무역의 연계방식에 대해 선후진국 간 의견대립
SOM-ECNEA	1993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고	고위관리 및 실무자	환경협력의 포괄적 논의, 시범사업 추진	5개 환경협력시범사업 추진	재정부족, 의제의 불분명, 일본, 중국의 소극적 참여, 상설기구 부재

16) 지역활동계획(RAP)의 목적은 오염예방과 통제, 환경질의 향상, 천연자원과 환경생태계의 보전·관리, 지속가능개발 정책 추진과 지표 및 평가 등이다. RAP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개별사업분야의 선정, Focal Point의 설정, 회원국과 ABD·UNDP의 참여를 통한 Regional Trust Fund의 설치 등이 있다.

명칭	시작 년도	참여국가 (기구)	참여주체 범위	협력의 목표와 내용	주요성과	문제점 및 전망
NOWPAP	1991	UNEP,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 UNEP 관리 및 관계 연구소	한반도 주변 해역의 환경보전	'실천계획' 채택, 협력의 원칙과 분야에 합의	리더십 부재, 재정부족
TumenNET	1995	UNEP,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몽고	정부 실무기구 및 민간단체, 기업	두만강유역지역의 생태환경보전 및 환경인식증진	국경 간 진단 및 전략행동계획 수립	예산부족과 조정기능의 취약,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
ECO-ASIA	1991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각료급 및 고위급 정부관료, 전문가	지역환경협력의 포괄적 논의	'장기전망' 채택, 중앙연구소와 정보센터설립 등 구체적 사업추진	일본이 주도, 구체적 실적과 전망에서 앞서고 있으나 한국 주도의 고위급 회담과 상층 가능성
동아시아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1992	일본, 한국, 중국	정부 실무자 학자 및 전문가	산성비 모니터링 및 자료구축	협력의 원칙과 내용에 합의, 산성비 감시 네트워크 구축 추진	일본의 재정 및 기술지원여부에 의존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워크숍	1995	한국, 일본, 중국	전문가, 정부 실무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연구	상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원칙 합의 공동연구사업추진	일본 주도의 산성비전문가 회의와 중복, 한국의 적극적 주도와 부담 요구
NEACEA	1992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정부 실무자 및 학자	각국 환경정책과 현황에 대한 의견교환	연례 심포지엄 개최	의제, 조직, 사업계획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양자간 환경협력

다자간 협력 외에도 우리나라는 1993년 한·일 환경협력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1993년 한·중 환경협력 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4년 한·러 환경협력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등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은 협력활동의 한 형태로 환경보호에 관련된 통계·정보·기술·자료 교환, 환경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상호교류, 공동세미나·심포지엄의 개최, 환경영향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¹⁹⁾ 이 중 증거의 신규성에 관하여는 그 증거가 법원에 대하여 새로운 것임에는 논란이 없으나, 당사자(재심청구인)에게도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필요설, 불필요설, 절충설의 견해 대립이 있어왔다. 종래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되는 증거는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에게도 새로워야 하고, 다만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절충설)를 밝혀 왔고, 이번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유지하였다. 다수의견의 취지는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이익재심인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우위에 있고, 다수의견과 같이 그 증거가 법원이 새로 발견하여 알게 된 것임과 동시에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의하여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에 해당한다는 불필요설의 관점에서 법원에 대하여만 신규성이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무죄 등을 인정하기에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였으나 그 부주의 또는 궁박·무지·경솔 등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재심이 무고한 사람을 구제하는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별개의견과 같은 불필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²⁰⁾

1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757면.

20) 이에 대하여 대법관 양승태 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취지는 우리 형사소송절차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므로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자료는 법원이 알기도 어렵고 증거로 하기 어려우므로 법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모두 이에 해당하여 결국 '새로'의 의미는 피고인이 종전에 이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이는 신규성의 요건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고, 피고인에게도 법적으로 많은 권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써 이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규성을 제한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인권보장이 미흡하게 된다고 우려하는 별개의견은 지나치게 이론에 경도된 기우라고 본다. 재판을 한 번 하더라도 당해 절차 안에서 인권보호의 이념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듭거듭 재판을 중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규성에 관한 별개의견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넘어선 법의 창조에 가까운 해석으로서 실

(2) 증거의 명백성

새로 발견된 증거는 명백해야 한다. 명백성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²¹⁾ 그 증거가치가 구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우위에 있어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만으로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신증거만에 의할 것인가 구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새로 발견된 증거의 증거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단독평가설). 이에 대하여 학설의 주류는 신·구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총합평가설 내지 구증거의 증거평가에 대한 원판결법원의 심중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재평가설이었다. 대법원은 이번에 총합평가설로 입장을 바꾸면서 그 이유로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것인바,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하에서 다시 살펴 실제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다만, 다수의견은 총합평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의 제시가 없다고 하면서, 신증거와 구증거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나 모순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구증거의 평가범위를 다수의견과 같이 새로운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것들로 그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 법원이 각 사안에 따라 새로운 증거와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한다. 새로 발견된 증거와 확정판결이 채용한 구증거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나 모순성은 실제 각 사안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구체적 총합평가설이라고 불어도 좋을 듯 하다.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재심 대상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신증거의 발견으로 확정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재심사유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미 무고하게 처벌받은 피고인을 구제한다는 재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별개의견에 수긍이 가나 그렇다고 재심청구의 이유와 관련 없는 구증거들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 점은 이 사건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이 밝히는

질적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기보다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위험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21) 대판 1999. 8. 11. 고지 99도93 결정.

2. 평가

이처럼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꽤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던 동북아 지역의 여건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환경협력의 포괄적·통합적 추진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협력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공동사업이 동북아 지역협력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 이행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고 있다.

광역성·누적성·복합성과 같은 환경문제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동북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점점 깊어가는 역내 환경 및 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관계 당사국 중 일부가 불참하면 협력체제의 효율적 구축과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양자 간 협력체제가 다자간 협력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다수의 양자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동북아 전체를 그 관할 범위 안에 둔다고 하더라도,¹⁷⁾ 그들 상호 간의 상충이 지역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전자가 후자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¹⁸⁾

한편, 다자간 협력체제 또한 관련 활동의 유기적 통합 및 체계적 추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프로젝트가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¹⁹⁾ 소지역적 차원의 환경협력 내용이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활동 및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논의 동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SOM-ECNEA의 경우 ESCAP이 한시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는 등 행정체제의 결여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재정지원의 의사를 표시한 에너지와 대기오염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법에 대해 참여국가들 사이의 이견이 심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 NOWPAP와 같이 환경오염의 주된 제공자인 중국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²⁰⁾ 실질적인 지역해양오

17) 양자 간 환경협력의 예로는 1993년 체결된 한·일 환경협력 협정, 한·러 환경협력 협정, 1994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협정 등이 있다.

18) 최정진,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Vol. 23 No. 1, 2008, 158면.

19) 예컨대 산성비 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는 동아시아 국가 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워크숍을 비롯한 여러 협력체제에서 중복하여 다루고 있다.

20) 정서용, "동아시아 해양환경보호와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 2004년도 ILA 해양법 발효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참조.

염문제의 대체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NEACEC와 같이 형식적인 한계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보의 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의 예를 보면, 유럽경제위원회(ECE)의 경우 유럽 전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²¹⁾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예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는 ESCAP을 들 수 있는데, 이는 ECE와 마찬가지로 환경전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약한 현 상황에서는 행정체계 및 전문인력 등의 부족이 만성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IV. 동북아 환경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안

1. 다자간 합의에 의한 환경협력체 구성

가. 환경협력체의 필요성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환경협력을 조직화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동북아 환경협력체의 역할 또한 기존 환경협력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안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창설되고, 공동의 노력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²²⁾ 환경협력체에서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의 환경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협의

21) 예컨대 1958년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바 있고 유해상품의 국제적 육로수송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1979년 월경 광역대기오염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의 체결을 주도해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그 밖에도 1980년대에는 이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등을 감축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90년대에는 초국가적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national Context), 국제수로와 호수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Lakes) 등을 채택한 바 있다.

22) 이러한 의미에서는 환경전담기구가 아닌 ESCAP을 발전시키자는 논의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 환경오염, 빈곤의 심화, 개발의 원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야 한다. 또한 장차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및 각 국가별 환경규제제도의 차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법·제도의 장·단기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조달방안을 아울러 강구할 수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창설함에 있어 협력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 내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 환경협력체의 구성

국제환경협력체는 지역 또는 국가 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국가 간 협정체결을 통해 설립되며 협정에는 안정적 자원조달의 확보방안, 전략행동계획 등의 수행업무 등이 포함되거나 별도 의정서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²³⁾ 국제적인 환경협력체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상설 사무국, 그리고 지역 내 각종 환경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과 자료의 교환 등을 수행하는 실무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조직은 지역 내 환경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실무그룹을 구성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동 협력체의 주요 임무와 역할은 지역 내 환경보전을 위해 각국의 정책을 파악,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협력체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전략계획을 작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협력체 구성은 일반적으로 협정(agreement)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협정에는 각종 용어의 정의, 대상권역, 주요 업무,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명문화 되어 각국의 동의를 받아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세부적인 과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속의정서나 별도 협약을 회원국 상호간에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자원조달에 관하여는 협력체 내 국가 간 경제력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 자원조달을 위한 공식적 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확대와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공통된 상황이다.

다. 지역 환경협력체 구성을 위한 검토

환경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환경협력체를 설립하는 방안은 환경에 대한 전반

23) 이에 반해 지역에서의 환경문제 전반을 다루는 환경협력기구는 독자적으로 설립·운영된 다기 보다는 지역공동체 또는 개발협력체의 산하 부문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별도의 기구성격을 가지는 형태로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사무국과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형태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 이에는 환경보전의 목적에 집중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정례적 각료급 위원회(committee) 개최를 통한 국가별 환경정책 조정방안, 환경협력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상설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설치 및 정보교환과 연구 활동을 위한 부문별 실무 위원회(working group)의 구성, 권역별 환경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북아 환경협력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는 ESCAP을 들 수 있다. 그러나 ESCAP는 환경전담기구가 아니며, 행정체계 및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역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종합·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자국이 역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하고, 일본은 현재 일본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ECO-ASIA를 역내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ESCAP의 환경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2. 환경협력체의 운영

어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지구환경의 공동적 관리를 위한 일반원칙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가 간 이익갈등과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²⁴⁾ 여기에서의 국제법적 규제는 규칙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원칙을 공표함으로써 관련된 행태를 관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련의 입법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²⁵⁾ 그동안 이와 같이 보편적 차원에서 월경성 환경피해에 대한 관계국의 배상 책임과 예방의무 등에 관한 국제법규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²⁶⁾ 또한 이러한 노력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

24) A. E. Boyle, *Saving the World: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3, 1991, pp. 229~245 참조.

25) P. Birni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s Adequacy for Present and Future Needs*, in A. Hurrell and B. Kingsbury(ed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Actors, Interests and I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52~53 참조.

26) P. W. Birnie and A.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 Press, 2001, pp.178~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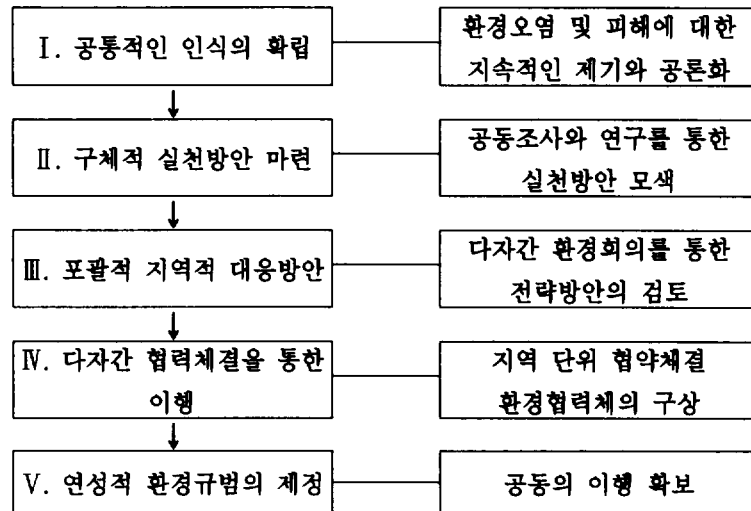
지 동북아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월경성 환경피해에 대한 포괄적 책임구제나 구체적 실효성을 갖춘 법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다자적 환경협력체제라는 틀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경성법(hard law)을 확립하지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접근과 대응(phased approach and gradual response)이 현실적이기 때문에,²⁸⁾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제1단계로 환경오염과 그 피해에 대한 사안을 지속적인 제기하고 국제적·지역적으로 공론화하도록 한다. 이는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³⁰⁾ 제2단계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 27)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 분위기에서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노명준·성재호·최승환·서철원,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 2001, 62면 ; 제성호,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제법적 실천과제”, 『저스티스』 통권99호, 한국법학원, 2007, 212면 참조.
- 28) 정서용, “황사와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통상법률』 제69호, 2003, 144~148면 참조.
- 29)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은 방법론상으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기존의 환경협력체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방안과 기구의 상설화, 환경협력 기금의 조성, 공동조사와 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 등을 제시하는가 하면(노명준 외(註 27), 60~61면 참조), 이슈의 지속적인 제기 와 국제공론화, 공동책임 및 공동대체 필요성 인식 확산(1단계) → 관련국 및 시민단체들 간의 정보교환체계 수립, 주요 환경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국가별 환경개선 전략프로그램 실행(2단계) → 고위급 다자 환경회의의 제도화 및 공동협력체제 구축, 국가별 환경개선 전략프로그램의 협력적 조정, 연성적 환경규범 생산, 다자적 환경프로그램의 공동 실시 및 검증(3단계) →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 동북아 환경기금조성 및 재원의 분담, 동북아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의 체계적 지원, 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메커니즘 확립, 지역적 다자 환경보호 및 협력조약 체결(4단계)이라는 순차적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제성호(註 27), 212면 참조)도 있다.
- 30) 동북아 지역 내 협력이 정부뿐 아니라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 주도형 협력체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정치적 부담감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매체별 연구조사, 정책연구, 정보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은 민간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협력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몽골에 대한 사막화방지 조림지원을 위한 기금 외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산림복구 지원 활동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명운·손희두·이준서,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51면 이하 참조.

〈표 3〉 환경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



모색하는 단계로, 역내 관련 국가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간의 정보체계를 수립하고,³¹⁾ 민감한 환경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국가별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³²⁾ 제3단계는 구체적으로 도출된 국가별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포괄적

31)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방 당사국에 의한 조사연구는 다른 당사국의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북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인정되는 캐나다와 피해영향이 적은 미국 간의 공동조사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과학적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공동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캐나다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기 힘들어 협약이나 의정서와 같은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김성윤(註 10), 29면). 반면, 유럽에서 환경피해와 월경 대기오염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역내 국가 간 합의를 얻는 과정에서 OECD와 ECE 같은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OECD는 1977년 유럽의 대기오염물질의 국제이동에 관한 보고서에서 오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국의 참여를 촉구하였다(한태환·정영록·이호생·심상규·유홍룡,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233면). 또한 ECE는 1978년 이후로 범유럽 월경대기오염 측정사업(the Cooperative Program for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smi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을 비롯한 모든 과학적 연구를 통합해 진행해왔다. 이들 기구가 주관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관계국의 과학적 합의를 형성하였고 포괄적 지역협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32) 앞서 장애요소로 제시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의 축적은 협력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입수된 자료 질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시망의 구축과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자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국제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필요

인 지역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고위급 다자 환경회의의 제도화 및 공동협력체제 구축,³³⁾ 국가별 환경개선 전략프로그램의 협력적 조정, 연성적 환경규범 생산, 다자적 환경프로그램의 공동실시 및 검증이 이에 해당한다.³⁴⁾ 제4단계는 제1단계 내지 제3단계의 일련의 절차들을 총합하여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협약의 체결, 지역 내 환경관련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협력체의 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현 단계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국경적 혹은 월경성 환경 오염원과 피해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 대화와 협의, 사전통고 및 상호협력, 사실조사, 감시의무, 공동이행 등에 대한 연성적 환경규범(soft environmental norms)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³⁵⁾ 동북아 국가들이 이 같은 형태의 결의나 선언을 통하여 이를 국제관행의 증거로 인정되도록 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천명함으로써 추후 동북아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협력을 실질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궁극적인 성과물은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한 상호 구속력 있는 협약 및 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역내 국가 간 오염배출 및 저감 계획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과학적인 정보의 확보와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의정서 체결과정에서 구속력을 지니는 법규로 발전하기 이전에 도덕적 호소, 태도 및 형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성법 형태의 지침 및 원칙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주장되기도 하며, 환경여건과 경제상황이 다른 동북아 지역의 여건상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협약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있다.

33) 이와 관련해서 그간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제안한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일본 환경청 주관의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Environmental Congress for Asia and the Pacific: Eco-Asia), 고위급 동북아 환경협력회의(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M-ECNEA) 등이 각각 열린바 있다. 앞으로 이들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다자환경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체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평화)협력체의 일 분과위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성호(註 27), 21면, 주 37.

34) 제성호(註 27), 21.

35) 최승환,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제2호, 1995, 189면.

3. 구체적 사업의 수행

주요 환경문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또한 지방, 국가, 국제차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속성들은 문제영역별 접근법이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동북아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지역적 환경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가별로 주목하는 별도의 환경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가령 산림파괴는 역내 모든 국가가 중시하는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막화가 중국과 몽골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과 일본에게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해양오염이 한국과 일본에게는 현안문제이지만 몽골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역내의 환경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레짐의 추진 움직임이 아직 없는 반면,³⁶⁾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레짐들이 대두 중인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 탓이다.³⁷⁾ 이러한 개념은 예컨대 국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영향력을 갖고³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국가들의 합의

36) 국제레짐이란 국제관계의 특정 쟁점영역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를 수렴하는 명시적,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principles), 규칙(norms), 정책결정절차(decision making procedures) 등을 말한다. 국제레짐은 국제체제의 의미에서부터 다자간의 조정협력, 공동이익을 위한 협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와 같은 공식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확대 사용되고 있다(J. M. Rochester,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Field of Stud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4), (Autumn, 1986), 799~800면). 레짐에는 법적 규칙이 포함되지만 그 보편적 개념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영역 내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칙, 규칙 및 정책결정절차의 총체”로 정의된다(S. D. Kra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 D.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1983). 국제레짐의 개념은 분명 기존 개념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실체를 확인하고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평가된다. 국제법이 국가 간 협상의 주요한 준거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레짐 이론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정에서 기본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 이는 지구환경쟁점은 ‘문제’의 개념과 경제, 정책 대안에 따른 비용, 행위자와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규명이 모두 분명하지 않으며 매우 불확실하다는 전형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연구협력(research cooperation)에 관한 것, 둘째는 범위에 관한 문제(problem of scope), 셋째는 적응성(adaptability)과 융통성(flexibility)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내용은 최재용 외, “두만강유역 환경보전후속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환경부, 2004, 46면 이하를 참조할 것.

37) 최정진(註 18), 160.

38) J. A. Finlayson and M. W. Zacher,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S. D.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로 명시된 '규칙의 체계(set of rules)'를 통해 각 국가들의 행위가 규제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의 협력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³⁹⁾ 따라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체 구축 전략은 문제 영역별로 관계 당사국들 모두가 참석하도록 유도해야 현실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산업화 및 개발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환경보전의 상호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공업화·산업화가 완료된 지역의 환경협력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개발 수요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의 부여가 필요하다.⁴⁰⁾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이상으로 북한과 관련한 환경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안정적인 체도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반복되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북한은 1986년 5월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0년 중반 이후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바다오염방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을 잇달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환경보호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환경 파괴의 원인을 나열한 내용에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포함시켰으며, 자연환경의 변화 상태를 조사하고 대책으로 세우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의 활동영역도 자연환경보호구역과 특별보호구역에서 모든 영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자연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호기구와 환경보호 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 협조·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적·국제적 환경보호에도 적극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황사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커짐에 따라 황사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에 관한 북한의 노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561~602.

39) 최재용·이은재,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구성방안 -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 700면.

40) 리 원이엔(李文彦)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주체로 열린 동북아 대도시의 미래라는 세미나에서 동북아 주요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구역시장체계의 활성화 및 금융기구체계의 건립 ② 북경, 천진의 통합 발전 ③ 북경-서울-동경의 직통라인 건설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리 원이엔(李文彦), “國際化로 나아가는 環渤海 地域의 大都市들: 發達과 課題”, 「동북아 대도시의 미래 -초국경화 전망과 협력방안-」, 1994, 71~74면.

력과 관련하여 학술교류와 환경위원회의 설치, 공동학술조사단 등을 구성하여 환경협력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⁴¹⁾

아울러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되었다가 사실상 중단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재개하여 두만강 지역을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지역적 협력지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어 TRADP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⁴²⁾ 이 가운데 환경부문에 해당하는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 NET) 사업은 국경 간 진단분석, 환경인식증진, 환경정보체계, 오염실태 조사, 전략행동계획 등의 부문별 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개별 사업위주로 운영됨으로서 지역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국 정부정책의 조정 및 입안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사업추진조직의 모호,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의 어려움 등은 기존 Tumen NET 사업의 한계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두만강유역에서의 기존 상호 환경협력 및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정보교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조직체내에서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역중심의 환경협력체 구성에 있어 필요한 각종 자원조달 및 인력의 확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협력 프로그램의 지역적 범위를 두만강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두만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³⁾

동북아지역은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환경협력을 위한 장기적 비전의 부족, 지역 국가 간 협력전통의 부재 등의 원인과 더불어 핵심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미비, 국가위주로 운영되는 행위자의 제한, 구속력 없는 합의 수준에서의 협력관계 선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종합 환경협력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유럽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속초-나진-훈춘으로 연결되는 뱃길과 도로의 개통 및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관광 상품의 개발이나 중국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개발하거나⁴⁴⁾ 유럽의 Natura 2000과 같이 공동의 생태보호구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물론 이러한 지역

41) 윤기관, "남북한 환경정책, 환경법체계 및 환경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제4호, 1993, 265~266면.

42) 자세한 내용은 최재용 외(註 36): 최재용·이은재(註 39)를 참조.

43) 최재용·이은재(註 39), 709.

44) 제성호(註 27), 210.

의 지정과 더불어, EU 회원국들은 양 지침에 따라 해당 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자연서식지와 지정된 지역의 생물 종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⁴⁶⁾

V. 마치며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꽤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여건의 다양화, 환경협력 추진 여건에 대한 상이한 입장,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부족 등 동북아 지역의 여건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과 대응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i) 환경오염과 그 피해에 대한 사안을 지속적인 제기하고 국제적·지역적으로 공론화, (ii) 역내 관련 국가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간의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민감한 환경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국가별 실천방안을 마련, (iii) 구체적으로 도출된 국가별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지역적 대응방안을 마련, (iv) 이상 일련의 절차들을 총합하여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밖에 개별적 사업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환경위원회의 설치, 공동학술조사단 등을 구성하여 환경협력 모델을 구성하고,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재개하여 두만강 지역을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지역적 협력지대로 발전시킬 필

45) 최종적으로 약 10%의 EC 영토가 Natura 2000으로 분류될 것이 예상된다. 2000년 11월, 2,920 곳의 장소(약 209,729km²)가 야생조류지침에 따라 지정되었고, 회원국들은 서식지 지침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12,178 곳(약 384,472km²)을 제안하였다. 일부 장소가 양 지침에 따라 제안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그 수가 쉽게 추가될 수는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 특정 EU회원국들은 그들의 해역 중 보호지역을 실질적인 비율을 준수하여 지정해왔다는 것이다. 영국의 Natura 2000 조직망은 약 3%의 지표면과 12마일 범위 내에서 약 6%의 해안이 포함되었다.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uropean Communities, Biodiversity in the European Union (HL 1199) (London, Nov. 1999), para. 40.

46) Wild Birds Directive Art. 3(1)(2), 4(4); Habitats Directive 4(4), 6(1)-(2). Case C-256/98, Comm. v. France, [2000] ECR I-2487. 야생 조류 지침 Art. 4(4)는 회원국들이 지정된 지역에 대한 서식지의 오염(pollution), 악화(deterioration) 및 생물 종들의 동요(disturbance)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성윤·김용우·안형기·이기한·정희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체계 - 동북아 환경개선 방안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3권 제3호, 1999.
- 노명준,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1호, 1992.
- 노명준·성재호·최승환·서철원,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 2001.
- 리 원이엔(李文彦), “國際化로 나아가는 環渤海 地域의 大都市들: 發達과 課題”, 「동북아 대도시의 미래 -초국경화 전망과 협력방안-」, 1994.
- 원동욱, “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 윤기관, “남북한 환경정책, 환경법체제 및 환경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제4호, 1993.
- 정명운·손희두·이준서,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정서용, “동아시아 해양환경보호와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 2004년도 ILA 해양법 발효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정서용, “황사와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통상법률」 제69호, 2003.
- 정희성·정희철, “동북아 환경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토계획」 제35권 제1호, 2000.
- 제성호,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제법적 실천과제”, 「저스티스」 통권99호, 한국법학원, 2007.
- 최승환,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제2호, 1995.
- 최재용 외, 두만강유역 환경보전후속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환경부, 2004.
- 최재용·이은재,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구성방안 -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
- 최정진,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Vol. 23 No. 1, 2008.
- 한택환·정영록·이호생·심상규·유홍룡,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